

## 대전마케팅공사 교통문화연수원운영내규

제정 2016. 10. 14. 내규 제 169호  
 개정 2018. 1. 5. 내규 제 202호  
 개정 2019. 12. 13. 내규 제 259호  
 개정 2020. 4. 10. 내규 제 26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조례(2015.6.19 조례 제4479호) 및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협약서」(2015.10.6.)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시민교통안전교육을 시장의 위임을 받은 사장이 관리하는 운영내규로서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 연수, 시설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 및 권한 등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체험교육"이란 교통안전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연수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및 야외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수교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연수교육생”이란 제2호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기위해 연수원에 등록·입교한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통서비스 증진 등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말한다. (강의실 및 강당, 3D영상관 등 시설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용자 포함)

5. "임차인"이란 강의실 및 강당, 3D영상관 등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를 하여 장소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대전교통문화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연수원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연수원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유무선의 예약 및 확인으로 신청 및 허가를 대신한다.

**제6조(안전체험교육)** ① 안전체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초과정, 세부과정, 중급과정, 관리자과정 등 학령별, 교급별, 시설별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7조(교육비 및 대관료)** ① 이용자 또는 임차인은 [별표 1]의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비 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및 대관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반환기준은 [표 3]과 같다.  
 ③ 교육비 및 대관료는 교육생이 입교·등록할 때 연수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연수원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

**제8조(강사 및 안전체험교사)** ① 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일반강사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체험교사(이하 “안전교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전교사에 지급하는 자원봉사실비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5.>  
 ③ 안전교사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안전교사의 원활한 관리와 교사수급을 위하여 대표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수역량강화활동, 교수법 연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1.5.>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임차인은 연수원의 임대장소 및 시설, 부대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연수원의 운영내규를 준수하고 행사 참가자 및 관람자 등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목적물 내에서 유희, 비도덕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 청소년에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대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연수원의 사전승인 없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조건)** ① 연수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연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유무선의 예약과 확인으로 사용신청서를 대신한다.

1. 사용장소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일 및 기간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입장예상인원
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성명, 연락처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연수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수원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연수원의 시설을 사용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⑥ 연수원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교육비 및 대관료 등은 연수원이 요청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수원은 시설물의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연수원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의 시설물을 사용하기에 연수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

**제12조(연수원 사용제한)** 이용자는 연수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직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내규 위반시 조치사항)** ① 임차인 및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운영내규를 위반할 경우 연수원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임차인 및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연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연수원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연수원이 제3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손실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연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연수원이 입은 손해(철거비용, 운영·관리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별도로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불가항력 및 면책)** ① 천재지변, 전쟁 등의 재앙과 국가정책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임차인 및 관련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연수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연수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장 연수교육 운영

**제15조(교육대상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이라 한다)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 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59조에서 정하는 운수종사자
3. 「화물법」 제8조 규정에 따른 대상자
4. 일반시민
5. 외부 기관·단체 등에서 연수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자

**제1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은 여객법 제53조 및 화물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설립된 조합 및 협회(이하 “운수단체” 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연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장과 운수단체에 보고 및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외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교육(이하 “수탁교육”이라 한다) 등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2. 교육과정별 계획인원, 시간, 횟수, 교육비
3. 교과목 배정시간
4. 교육일정 및 강사
5. 그 밖의 연수교육생 등록절차관리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육일정의 변경)** 각 운수단체 또는 운수회사에서는 사전 예약된 운수종사자 전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여 교육일정 취소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 교육일 2주전 까지 연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강)** 천재지변 또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등록 및 입교)** ① 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사전예약을 하고 연수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등록을 완료하고 입교를 마쳐야 한다. 다만, 연수원은 제16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운수단체 또는 운수회사가 교육대상자의 교육일정에 따른 사전예약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 입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신체상결함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할 경우 연수원 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연수원이 입교 부적격자로 결정한 자
2. 음주, 소란 등으로 타 교육생의 연수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
3. 해당교육과정 관련 직종이 아닌 자, 대리참석자

**제20조(연수교육생 준수사항)** 연수교육생은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기간 중 지시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강의개시 5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수강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강의실에서는 연수교육과 관계없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4. 강의실에는 신문, 잡지 및 커피, 음료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5. 연수교육생은 교육 중 어떠한 경우라도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과 음주를 금지한다.
6. 기타 교육효과를 저해시킬만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외출·조퇴)** ① 연수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질병, 중대한 직무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외출·조퇴로 인해 1시간 이상 교육에 불참한 경우, 별도의 입교·등록절차를 거쳐 당해 연도 내에 동일 교육과정의 잔여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연도 내에 동일교육과정이 없어 잔여시간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이미 참여한 교육시간은 무효로 한다.

**제22조(퇴교 조치 등)**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교 조치를 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1시간 이상 무단 결강한 자
3. 원내에서 음주·도박을 하였을 때
4.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하였을 때
5. 교육기간 중 연수원을 무단이탈 하였을 때
6. 연수교육생 상호간에 집단행동 및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7. 교육질서 문란으로 타 연수교육생의 교육에 상당히 지장을 줄 때
8. 연수원의 교육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에 중대한 위반을 한 때
9. 신병 등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퇴교 조치 이외에도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교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퇴교 조치를 할 경우 이미 참여한 교육시간은 무효로 한다.

**제23조(교육결과 통보)** 연수원은 당해 연도의 교육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 및 운수단체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설문조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문 등의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1. 교과목별 성과도
2. 강사에 대한 호응도 및 교육효과
3.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강사 선정·관리)** ① 운수종사자 교육은 연도마다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과목 별로 강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교육 등은 해당 교육 실시 전까지 강사를 선정한다.

② 수탁교육 등의 강사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교육방향, 교육성격, 교과목에 따라 별도의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강사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통관련 전문기관·운수단체·연구기관 등에 강사 추천 의뢰 및 희망자 접수 후



[별표 1]

### 교육비 및 대관료

구 분	대 상	종 류	기 준	교육비 및 대관료
교 육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1인/회	20,000원
		보수교육	관내 운수종사자(1명당)/회	무 료
	타시도 운수종사자(1명당)/회		5,000원	
	시민·단체	교통안전 체험교육	성인(1명당)/회	3,000원
어린이·청소년(1명당)/회			2,000원	
대 관	시민·단체	대 강 당	1회(4시간까지)	100,000원
		3D영상관 중강당·소강당	1회(4시간까지)	50,000원

비고 : 1. 대관 : 냉·난방비 시간당 40,000원 별도,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요금(대강당 25,000원, 3D영상관 12,500원) 가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기준 요금의 100분의 50 가산

- “성인”은 19세 이상인 사람,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연수동 3층 중강당, 소강당의 대관료는 3D영상관 대관료에 준한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기초통합교육과 학령 및 교급에 따른 수요자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회별로 징수한다. 교육의 진행에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별도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2019.12.13.>

### 교육비 및 대관료 감면기준

대 상			감 면 기 준
안전체험교육비	연수교육비	연수시설대관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요청한 사항	좌동	좌동	전액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인솔교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액감면
등록장애인 및 동반 2인, 국가유공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액감면
관내지역아동센터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50%~100%

※ 교육비 및 대관료의 감면은 문서 혹은 현장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결과를 일보에 기록 보관한다.

[별표 3]

### 교육비 및 대관료 반환기준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 개시일 전까지	전액환급
	사용 개시일 부터	환급불가

※ 교육비 및 대관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